

제주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가단66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창고 97.2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1. 7. 접수 제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한 무효의 이전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1702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7. 원고로부터 201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서류를 위조하여 한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1. 28.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2013. 12. 2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하게 마쳐진 것임을 뒷받침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대